

EU 디지털서비스법(Digital Service Act),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

1. EU 『디지털서비스법』이란?

- EU는 '20. 12.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("DSA")을 발의하였고, 위 법률은 '22. 7. 유럽의회의 개정안 채택을 거쳐서 '23. 8. 25.부터 EU 전역에 전격 시행되었습니다.

▶ **온라인 플랫폼** :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 및 배포하는 '호스팅 서비스(DSA 제2조)' 제공자로, SNS플랫폼·미디어 공유서비스·검색엔진 등을 포괄함

2. EU 『디지털서비스법』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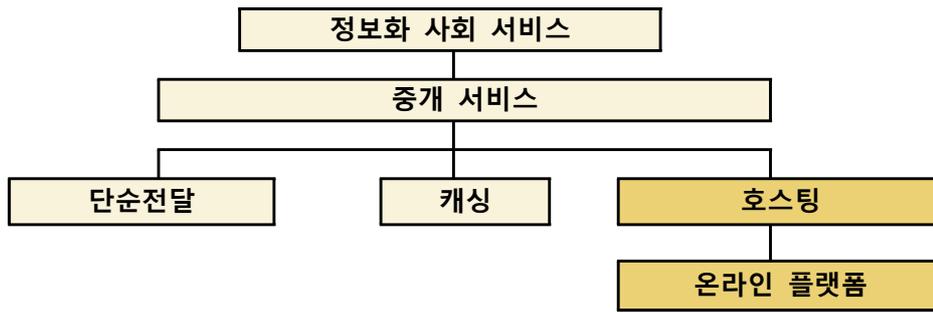
- DSA는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, 온라인 플랫폼의 범세계적 대중화로 인한 ① 개인정보 유출, ② 불법 콘텐츠 양산, ③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
【EU 디지털 서비스법 도입 경과】

- ▶ ('20. 12. 15.) EU 집행위원회의 '디지털서비스법(안)' 최초 발의
- ▶ ('22. 4. 23.)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간 '디지털서비스법(안)'에 관한 합의 성립
- ▶ ('22. 7. 5.) 유럽의회의 디지털서비스법 개정안('디지털서비스법') 채택, 본회의 통과
- ▶ ('22. 11. 25.) EU이사회의 승인 및 '디지털서비스법' 발효 및 집행
- ▶ ('23. 8. 25.) '디지털서비스법' EU 전역 전격 시행

- DSA 제2조에 따른 본법의 규제 대상은 정보화 사회 서비스(information society services)로, 그 하위개념인 중개서비스(intermediary services) 중 ① 단순전달서비스(mere conduit), ② 캐싱서비스(caching) 및 ③ 호스팅서비스(hosting, 온라인 플랫폼 포함) 일체입니다.

【EU 디지털서비스법 규제 대상 구조도】



- ▶ **캐싱** :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캐쉬(cache) 발급을 통해 정보를 저장하며 Internet Explorer·Chrome·Firefox 등의 '인터넷 전송 서비스'가 대표적
- ▶ **호스팅** : 이용자 요청에 따라 자동적임시적 정보 저장, Dropbox·Cloud 등의 '정보 배포 네트워크'가 대표적

3. EU 『디지털서비스법』 주요 내용

- DSA는 EU이용자에게 또는 EU이용자를 상대로 정보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쉰 사업주체들을 대상(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 무관)으로 공통적으로, ① 불법 콘텐츠 대응의무와 ② 투명성 확립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합니다(DSA 제1조, 제14조, 제15조).

- ▶ **불법 콘텐츠** : 행태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 혐오 표현, 테러물, 저작권 침해, 개인정보 유출 등 EU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일반(DSA 제2조)

- 불법 콘텐츠 대응의무와 관련하여,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들은 ▲불법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규제당국의 정보삭제명령을 준수하고, ▲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락담당자 및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(DSA 제8조, 제10조, 제11조).
- 투명성 확립의무와 관련하여,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들은 年 1회 이상 ▲서비스 내 콘텐츠 관리 방식·횟수에 관한 사항, ▲콘텐츠를 임의로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할 경우 그 삭제이유 및 항의내역 여부, ▲불법 콘텐츠 관련 신고 및 대응현황 등이 기입된 '투명성보고서'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합니다(DSA 제15조).

□ 한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, 위 공통사항에 더하여 추가적·중첩적 의무가 발생하는바, 특히 불법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또는 신고에 의해 발견 될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제거·비활성화 하는 등의 자체 조치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.

○ 특히 ‘온라인 플랫폼’은 대표적인 호스팅 서비스로,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▲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의무, ▲DSA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용자 대상 조치의무, ▲다크패턴 금지의무 및 ▲강화된 투명성 보고의무 등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

[DSA상의 ‘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’ 대상 추가 의무]

- ▶ **(분쟁조정시스템 구축)** 자신의 콘텐츠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차단되어 이에 불복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, 해당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요구
- ▶ **(상습 위반자 조치)**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·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최초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·상습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한 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그 업로드한 이들을 대상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 중지 요구
- ▶ **(광고 관련 투명성 조치)**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들은 ▲자신들의 플랫폼에 유통되는 콘텐츠가 ‘광고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▲광고주가 누구인지, 왜·어떤 기준 때문에 이용자 개인에게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는지 공개 요구
- ▶ **(민감정보 활용한 광고 금지)** 특별 분류된 개인 정보, 즉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 개인의 인종·정치·성별·생활·신념에 관한 분석자료를 이용한 광고 금지 요구

○ 나아가 월평균 활성화 이용자 수가 4,500만 명 이상을 보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를 ‘대규모 온라인 플랫폼(Very Large Online Platform)’이라 하며,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%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(DSA 제26조, 제52조).

- ▶ **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현황** : Alibaba AliExpress, Amazon Store, Apple Appstore, Booking.com, Facebook, Google Play, Google Maps, Google Shopping, Instagram, LinkedIn, Pinterest, Snapchat, TikTok, X(구. Twitter), Wikipedia, Youtube, Zalando

4. 동향 및 시사점 등

-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부처별로 행정입법을 준비하고 있고, 국회에서도 '한국형 DSA'를 표방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.
-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·서비스 마케팅이 활성화되고, AI 기반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는바,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도 DSA를 비롯한 각종 AI·디지털 관련 규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위 법안과 관련하여 ① EU DSA 법안 원문, ② 국회도서관 편찬 EU DSA 법안 입법 동향 분석자료, ③ 언론중재위원회 편찬 EU DSA 기고문을 본 게시물과 함께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.
-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디지털 법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,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☑

담당자 :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황현준